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융자지원 대상에 체육용구생산업체 등 추가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05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융자지원 대상에 체육용구생산업체 등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8. 30.
3. 회 부 일: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22조).

Ⅲ. 검토의견

1. 용자지원 대상에 체육용구생산업체 등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22조).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생략)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u>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용자하게 할 수 있다.</u>	② ----- ----- ----- -----지정할-----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③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 -----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1. <u>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u> 2. <u>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u>와 관련된 업(業) 3. <u>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u>하는 업 4. (생략) ④ ~ ⑧ (생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6. (생략) 7. <u>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u> 따른 자금의 융자 8. ~ 12. (생략) ② ~ ④ (생략)	----. 1. <u>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業)</u> 2. <u>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u> 업 3. <u>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u>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17조제3항에</u>----- ----- 8.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행법 제17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

사업 목적	o 스포츠기업에 대한 융자·이자보전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 경과	o '91년~ 우수체육용구생산업, '96년~ 체육시설업, '06년~ 스포츠서비스업 o '14년 융자이율 변경(고정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지원 대상	o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용역업체							
지 원 방 식	구 분	융 자('91년~)		이자보전('23년~)				
	융자분야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기성고)		운전, 연구개발				
	융자기간	5~10년(거치기간 포함)		3년(일시 상환)				
	지원규모 (^{'24} 년 예산)	1,579억원		2,340억원(예산 58.5억원*) * 58.5억원 = 2,340억원×2.5%				
	지원방식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 (은행담보부 대리대출) * 은행 대여수수료 1%		대출 이자 지원 * 협약은행으로 대출				
	적용이율	공공자금 융자계정 금리(분기별 변동) * '24. 3/4분기 3.43%		시중금리 일부 지원(2.5%p) * 기업별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 발생				
	취급은행	13개 은행 * 경남,국민,광주,농협중앙회,대구,부산,수협중앙회,신한,우리,전북,제주,기업,하나						
지 원 절 차	o 기금융자심의회 개최 지원기업 선정, 협약은행에 대상자 통보·실행							
	① 융자	계획수립 및 공고	신청·접수	심의 및 대상통보	대출신청 기업→금융기관	요청 및 대여 공단→금융기관	대출시행 금융기관→기업	
		② 이차 보전	스포츠 산업지원 홈페이지	스포츠 산업지원 홈페이지	공단→기업, 금융기관	대출 및 이차지급 기업→금융기관	이자보전금 요청 금융기관→공단	이자보전금 지급 공단→금융기관

그런데 현행법상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용구등생산업체는 우수 업체로, 체육관련용역업체는 경기업·마케팅업·정보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¹⁾, 융자지원금액의 약 98%가 체육시설업체 지원에 치중된 상황임.

[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융자			이차보전		
	지원액	지원수	비중	지원액	지원수	비중	지원액	지원수	비중	지원액	지원수	비중
체육시설	1,324	527	97.3%	2,263	472	98.9%	748	141	98.3%	1,119	277	97.3%
용구생산	26	12	1.9%	10	6	0.4%	13	2	1.7%	13	5	1.1%
스포츠용역	11	10	0.8%	16	10	0.7%	-	-	0.0%	18	8	1.6%
계	1,361	549	100%	2,289	488	100%	761	143	100%	1,150	290	100%

*‘비중’: 지원액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융자지원 대상을 모든 체육용구등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용역업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1) [융자대상 세부분류]

용 자 대 상		구 분	분 야	한도액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 서비스업체 (경기업, 정보업, 마케팅업)		융자	설비자금	10억원
		이차보전	연구개발자금	3억원
			운전자금	5억원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등록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업체	융자	시설설치	30억원
		이차보전	개·보수	10억원
			운전자금	2억원
		신고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업체	융자	시설설치
	이차보전		개·보수	10억원
			운전자금	1억원
	문체부 지정 대중형 골프장		융자	시설설치/개·보수
		이차보전	운전자금	10억원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융자		개·보수	50억원
	이차보전	운전자금	1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표] 개정안에 따른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대상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제2항) 문체부장관 지정 우수 체육용구등생산업체	(제3항제1호) 체육용구등 생산업
체육시설 업체	(제3항 본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 인정	(제3항제2호) 체육시설 설치·운영업
체육용역 업체	(제3항 본문 및 각호) 체육용역업체 중 필요성 인정 - 스포츠 경기업 (체육 행사 기획업) - 스포츠 마케팅업 (수익사업 대리·선수 등 계약 대리 관련업) - 스포츠 정보업 (체육 관련 정보 생산·제공업)	(제3항제3호) 체육 관련 용역·서비스 제공업

2022년 조사 기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대상이 기존 79,944개의 업체에서 일반 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스포츠게임·여행업 등 5,460개의 업체가 추가되어 85,404개의 업체가 되는바,

개정안은 스포츠업체간 형평성 제고,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기금 불용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해 보임.

[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업체 수

업종(단위: 개)	2021년	2022년	비고
계	82,859	85,404	-
①체육용구생산업체 계	3,703	3,830	-
-우수업체	117	135	-
-일반용구생산업체	3,586	3,695	-
②시설업 계	44,168	45,192	-
-경기장 운영업	291	261	-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	36,262	36,946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등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476	498	-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6,506	6,900	낚시장,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스포츠 건설업	633	587	-
③서비스업 계	34,988	36,382	-
-경기업	85	102	프로·실업 경기단체 등 스포츠활동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예: 프로야구단, 동계스포츠 클럽, 실업경기단체)
-마케팅업	1,219	1,415	스포츠인 대라관리 산업활동(예: 스포츠인 매니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자문·지원 산업활동 등
-정보업	39	46	수집·조합한 스포츠 관련 자료를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예: 축구·야구 정보 서비스)
-미디어업	84	94	스포츠 신문 발행업,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예: 스포츠 케이블방송)
-스포츠 교육기관	32,002	32,960	태권도·무술·수영·축구 등 스포츠 교육 산업활동(예시: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게임업	287	290	스포츠 주제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공급 산업활동(예: 스포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여행업	1,272	1,475	국내외 관광객 대상 골프 등 스포츠 여행 관련 시설 이용 알선, 여행 안내, 계약체결 대리, 기타 여행 편의 제공 산업활동(예: 스포츠 여행사)

* : 기존 지원 대상 업종/ : 추가 지원 대상 업종

**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용품업' 중 금융지원 대상이 아닌 '용품 유통·임대업'(약 35,000개)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재구성)

다만, 안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용역’과 ‘서비스’를 나열하는 것은
동어반복이 될 수 있는바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한편, 문체부는 기존의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 지정제도(안 제17조
제2항)와 관련하여, 모든 체육용구생산업체가 융자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기선정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심의회 심사 시 ‘우선배정’, ‘우대금리’ 등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설명함.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모든 체육용구생산업체 등으로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36)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²⁾

문 의 처
02)6788-5375

2) 우상호의원안(2020. 8. 10.)

○ 심사경과: ● 문체위 회부(20.8.11), 상정(9.18.) 소위(1차 9.21., 2차 11.24.), 대안반영폐기(11.26.)
● 법사위 회부(20.11.26.), 임기만료폐기(24.5.29.)

[참고 1] 전체 스포츠산업 현황 (「2022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22년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매출액)는 78조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80조)에 가깝게 회복되었음
- (매출액) '21년 63.9조원 → '22년 78.1조원 (22.3%)
- (종사자 수) '21년 40.6만명 → '22년 44만명 (8.4%)
- (사업체 수) '21년 11.6만개 → '22년 12.1만개 (3.9%)

구분	매출액 (십억원, %)			종사자 수 (명, %)			사업체 수 (개, %)		
	2021	2022	증가율	2021	2022	증가율	2021	2022	증가율
전 체	63,881.9	78,106.9	22.3	406,022	440,215	8.4	116,095	120,652	3.9
스포츠시설업	16,468.5	21,323.6	29.5	172,158	185,017	7.5	44,168	45,192	2.3
스포츠용품업	30,623.5	32,916.2	7.5	133,062	141,856	6.6	36,939	39,078	5.8
스포츠서비스업	16,789.8	23,867.1	42.2	100,803	113,342	12.4	34,988	36,382	4.0